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12. 9. 선고 2015고단 1222 판결 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 결

사건 2015고단1222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구세희(기소), 윤신명(공판)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5. 05:00경 구미시 B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싼 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는 헬스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소유 시가 2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9세)의 싼타페 승용차에 들어가 승용차에 남겨져 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보고 같은 날 05:04경부터 05:4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누나 빤스 냄새 맡으면서 있어요", "빤스 가지고 집에 갈 란다", "내가 왜 누나차에 있으까 정말 기묘하네 까만 빤스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들고간다", 누나 생각하면서 DDR한다 누나 빤스에"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내사보고(첨부된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2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 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채정선